

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39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
- 가. 구청장 협의회 회의('21.3.17.)
- 나.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마을버스 운영위기 지원 대책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및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제3항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3조
-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('21.4.5.)

나.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급

- 지급일: 2021.4.14.(수)
- 지급금액: 총 80,000천원(마을버스 업체당 10,000천원)
- 지급조건
 - 재난지원금 지급의도와 일치하게 활용하도록 이용 범위 및 사용기간 규정
 - 인건비(수당), 차량유지 보수비 등 업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

3. 추진경과

- 재난지원금 사용내역 정산보고: 2021.6.30.한 구청 제출
 - 사용내역: 차량 유류비, 운수종사자 보수

4. 기대효과

- 마을버스 운수업체 운영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